

의안번호	제 278 호
의결도출일	1995. 5. 27. (제 33 회)

의결 사항	원안 가결	

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년월일	1995. 5. 10.

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278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5. 5. 10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제안이유

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. (안, 제23조제7항)

3. 본 문

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(안)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(특별휴가)①~⑥(생략)</p> <p><u>⑦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23조(특별휴가)①~⑥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</p>